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제25339호, 2014.4.29., 타법개정]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25404호, 2014.6.27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주택법」 제2조·제21조·제21조의3·제21조의4·제21조의5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, 부대시설·복리시설의 범위·설치기준, 대지조성의 기준,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,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,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 - - - - 제2조, 제21조,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대지조성의 기준,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- .
<신 설>	제58조(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)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”란 1,000세대를 말한다.
제64조의2(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) ①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 <u>1.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(불박이 가구 및 불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)의 사용에 관한 사항</u> <u>2.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3.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,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4.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</u>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<삭 제>
제66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	제66조(규제의 재검토) - 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: 2014년 6월 25일
<신 설>	